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령사회의 치유에 관한 연구

김석은*

*공주대학교 LINC3.0사업단
e-mail:sekim@kongju.ac.kr

A Study on the Healing of Aging Society for Sustainable Society

Seok-Eun Kim*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령사회의 치유에 관한 융합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치유농업(Agro-healing)의 개념부터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고찰한 선행 연구자의 문헌을 통해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치유농업은 생산과 치유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치유’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 기대된다.

1. 서론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던 한반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50년 동안 9차에 걸친 경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잘못된 인구정책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어 만65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된지 얼마 안 되어 2025년에는 전 국민의 65세 인구가 20%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사회는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치유에 관한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2. 치유농업의 정의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약칭 「치유농업법」을 제정하였다.

2.1 국내 치유농업

치유농업법에서는 치유농업(Agro-healing)을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2 국외 치유농업

유럽 등 외국에서는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을 사용하고 있고, 치유농업은 농장에서 농촌의 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힐링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한다.

3. 치유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잡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자연에서 치유하기 위하여 산속으로 향한 경우가 많다. 자연에서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치유농업은 생산과 치유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치유’에 관하여만 다루고자 한다. 농업 측면에서는 작물, 원예, 축산, 산림자원 등의 활용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다. 농업생산 중심의 치유농업은 농장주 중심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치유중심의 치유농업은 농장주 중심이 아닌 기관이나 치유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농업치유라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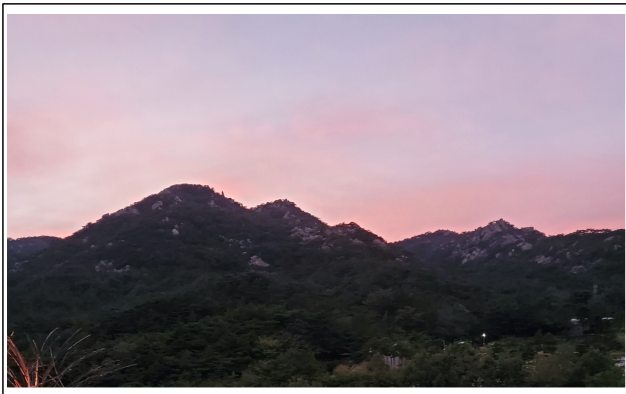
수 있다.



[그림 1] 자연 치유 '꽃'



[그림 2] 자연 치유 '동물'



[그림 3] 자연 치유 '산림'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 기대된다. 본고는 준비가 부족하여 향후 보완하여 올릴 것을 약속드린다.

참고문헌

- [1] 김경미·문지혜·정순진·이상미,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제 20권 4호, pp. 909-936, 2013년.
- [2] 김옥자, “치유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의도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논문, 2018년.
- [3] 윤정식,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체질별 자연치유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지, 제 1권 1호, pp. 57-75, 2017년.
- [4] 장정길·이강균, “지속가능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한 자연치유학적 고찰”, 지속가능과학회, 제 3권 3호, pp. 1-14, 2012년.
- [5] 정기성, “자연치유의 산업화 방안과 사례연구”,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지, 제 1권 1호, pp. 139-160, 2017년.
- [6] 법제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3월 25일(시행).

4. 결론 및 제언

지속가능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국민 각자가 맡은 직분을 책임감 갖고 감당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전국 11개를 지정하였다. 앞으로도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양성기관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자연은 자연적으로 우리들을 치유하지만, 예전 어느 광고처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합법적인 농업치유가 될 것이다. 고령사회의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